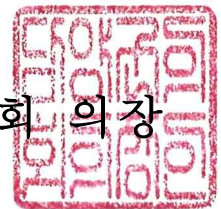


장애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장애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9. 27.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장애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차별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사회 활동 제한의 장애 표현 삭제
“심신장애”라는 표현 → 삭제
- 주요 개정 조례안

가. 「담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현행 : 심신장애

⇒ 개정 : 건강상의 이유

나.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 심신장애

⇒ 개정 : 장기 입원 등 건강상의 이유

다. 「담양군 지역농산물 공급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 심신장애

⇒ 개정 : 장기 입원 등 건강상의 이유

라.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 현행 : 심신장애

⇒ 개정 :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이유

4.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8. ~ 10. 4.(7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장애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장애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담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2조(「담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담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장기 입원 등 건강의 이유**”로 한다.

제4조(「담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담양군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담양군 지역농산물 공급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장기 입원 등 건강의 이유**”로 한다.

제7조(「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한다.

제8조(「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호 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등으로 인한”으로 한다.

제9조(「담양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담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 (해임) 단원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제6조 (해임) ----- ----- -----
3. 단원이 <u>심신장애</u>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u>건강상의 이유</u> ----- -----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제2조(「담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 -----.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u><삭 제></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	-----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u> 2. ~ 4. (생략)	제14조(위원의 해촉) ----- ----- -----. 1. <u>장기 입원 등 건강의 이유</u> ----- ----- 2. ~ 4. (현행과 같음)
--	--

제4조(「담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 ⑧ (생략) ⑨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 4. (생략) ⑩ ~ ⑫ (생략)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u><삭제></u> 2. ~ 4. (현행과 같음)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5조(「담양군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략)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 4.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삭 제></u>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담양군 지역농산물 공급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 4. (생략)	제7조(위원의 해촉) ----- ----- ----- ----. 1. <u>장기 입원 등 건강의 이유</u> ----- -----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의 임명·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u>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생략)	제9조(위원의 임명·위촉해제) -- ----- ----- -----. 1. <u>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u> ----- 2.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의 임명·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u>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생략)	제17조(위원의 임명·위촉해제) - ----- ----- -----. 1. <u>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u> -----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① ~ ⑥ (생략) ⑦군수는 위원이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생 략)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u>심신장애로 인하여</u>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생 략) ⑧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u>등으로 인한</u> ----- ----- 3.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	--

제9조(「담양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⑤ (생 략)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로 인한 직무를 수</u> <u>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 4. (생 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삭 제></u> 2. ~ 4. (현행과 같음)